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851 발의연월일: 2021. 6. 17.

발 의 자:고영인·허종식·이용빈

전용기 • 백혜련 • 조오섭

전재수 · 김승남 · 홍정민

윤준병 • 유정주 • 박성준

정성호 · 남인순 · 최혜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및 징수금의 고지·독촉의 경우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송달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높아졌고, 전자문서의 경우 종이문서에 비해 비용과취급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으며, 송달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업 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의8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
	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
	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
	으로 정한다.
<u><신 설></u>	④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독촉
	의 도달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
	의8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지"는 "독촉"으로 본다.
<u>③</u> · <u>④</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